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01	오세희의원	2025.10.10.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소 위원회 회부
2		2214162	송재봉의원	2025.11.12.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기업소 위원회 회부

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6. 3. 11.)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12.)에서 중소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중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 · 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3) 영업손익

4) 당기순손익

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 내역

- 1) 매출원가
-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 3) 영업손익
- 4)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5) 법인세비용
- 6) 당기순손익

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
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 소득 정보

자.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받은 정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차.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

를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u> <u>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u> <u>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u>

-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 · 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
한 다음의 정보

-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
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업
장 소재지 · 전화번호, 법인
등록번호

-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 · 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
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
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3) 영업손익

4) 당기순손익

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3) 영업손익

4)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 법인세비용

6) 당기순손익

사. 「소득세법」 제164조제1

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
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일
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
서 정보

아. 「소득세법」 제4조에 따

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
득 및 근로소득 정보

자.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

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
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
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
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후단 및 「법인세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차.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

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

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1.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7조에 따른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 2. 「<u>중소기업기본법</u>」 제25조의2에 따른 <u>중소벤처기업연구원</u> 3.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 제35조에 따른 <u>신용보증재단중앙회</u> ④ <u>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u>
<u>제36조</u>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u>제37조</u>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생 략) <u>제37조</u>(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u>제36조</u>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현행 제36조와 같음) <u>제38조</u>(과태료) ① ----- -----<u>제37조</u>----- ----- ----- -----. ② (현행과 같음)
--	---